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737

발의연월일: 2022. 12. 7.

발 의 자:최기상·강민정·기동민

김남국 • 김성환 • 김영배

박상혁 • 박재호 • 박찬대

이동주 · 임호선 · 허종식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과 시・도긴급구조통제단장(소방본부장) 및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소방서장)으로 하여금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수방(水防)・진화・구조 및 구난(救難), 그 밖에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제37조제1항).

이와 달리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러한 응급조치 의무가 부과되어 있지 않음.

그러나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는 시·군·구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만 이러한 응급조치의무를 부과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인력과 재원 등을 확보하고 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이러한 긴급조치의무를 함께 부과하는 것이 재난 대응에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이에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같이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재난 관련 응급조치의무를 부과하고자 함(안 제37조제1항 및 제2항).

법률 제 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장·군수·구청장"을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군·구의"를 "지방자치단체의"로, "시장·군수·구청장이나"를 각각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으로, "시·군·구안전관리계획"을

부 칙

"시·도안전관리계획 또는 시·군·구안전관리계획"으로 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7조(응급조치) ① 제50조제2항	제37조(응급조치) ①
에 따른 시·도긴급구조통제단	
및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	
의 단장(이하 "지역통제단장"이	
라 한다)과 <u>시장·군수·구청</u>	<u>시·도지사 및 시장</u>
<u>장</u> 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	<u>·군수·구청장</u>
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는 즉시 관계 법령이나 재난대	
응활동계획 및 위기관리 매뉴	
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방	
(水防)・진화・구조 및 구난(救	
難), 그 밖에 재난 발생을 예방	
하거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응급조치	
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통	
제단장의 경우에는 제2호 중	
진화에 관한 응급조치와 제4호	
및 제6호의 응급조치만 하여야	
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② <u>시·군·구의</u> 관할 구역에	② <u>지방자치단체의</u>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나	<u>시·도지사, 시장</u>

지역통제단장이 요청하면 관계 법령이나 시·군·구안전관리 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장·군수·구청장이나 지역통 제단장의 지휘 또는 조정하에 그 소관 업무에 관계되는 응급 조치를 실시하거나 시장·군수 ·구청장이나 지역통제단장이 실시하는 응급조치에 협력하여 야 한다.

・군수・구청장 또는
<u>시·도안전관리계획 또</u>
는 시・군・구안전관리계획
<u>시·도</u>
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u>시·도지사, 시장·군수</u>
<u>· 구청장 또는</u>